

투표를 위한 휴무

투표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선거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시간이 연장됩니다.



成已投票 투표했습니다 Bumoto Ako
COBAJ Ես Քվեարկել Եմ من رای دادم
ि किया 投票しました ខ្ញុំបានបោះឆ្នោត
ការើមរត់រក់ខាងប្រងៃងេរង់តំ Tôi Đã Đi Bầu
দিয়েছি ကျွန်ုပ် မဲပေးခဲ့သည်။ ਮੈਂ ਮਰ ਆਪੀ
Sudah Memilih би САНАЛАА ӨГСӨН
ನೆನು ಓಟು ವೆಶಾನು

만약 귀하가 그 시간 동안 직장에 있을 예정이고 근무 시간 외에 주전체 선거에 투표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캘리포니아법은 귀하가 어떤 보수도 잃지 않고 투표하기위해 2시간까지 휴가를 낼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투표하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들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중 2시간 만 지급됩니다.

투표를 위한 귀하의 휴가는 귀하의 고용주와 다른 협정을 맺지 않는 한, 귀하의 정규 근무 교대의 시작이나 또는 끝 중 투표하기에 가장 자유로우며 최소 시간을 허용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선거 3일 전에 투표하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최소한 선거 2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표를 위한 휴무

고용주 공지 사항 투표를 위한 직원 휴무

주법(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4001조)은 고용주들이 주 전체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유급 휴가를 내기 위한 조항을 권고하는 공고문을 직원들에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지의 샘플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 페이지의 반대편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는 주 전체 선거 10일 전에 직원들이 자신의 근무지에 드나드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본 공지 또는 기타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주 총무처 장관실 유권자 핫라인 (800) 345-VOTE(8683)으로 문의하십시오.

직원들은 근무 시간 외에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투표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법의 취지는 직업상 그렇게 할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투표의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투표소는 선거일에 오전 7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 다.

직원들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주어 지지만 최대 두시간만이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투표를 위해 추가 휴 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원들 에게 미리 공지하는것이 요구 될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시간 시 작이나 종료시에만 휴가를 받 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4000조